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을 추가〉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8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안 제31조제1항제9호가목)	7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안 제31조제1항제9호가목)	12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안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5.
3.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76)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작	1. ~ 8. (현행과 같음)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 아. (생략)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신 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9.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 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 가목 및 나목을 통해 추가될 수 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음. 근거 법률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2가지 경우가 있고, 발생한 결과 측면에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2가지가 있으므로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로자에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①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③

아래에서는 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의 순서로 검토함.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 해를 가한 경우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가목을 통해 추가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
로자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경우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1항제9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¹⁾은 계약을 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
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하는 과정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음. 동 [별표 2] 21. 다. 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²⁾.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21.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2) 참고로 일부 언론보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짧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됨. 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자 기사 “노동자 10명 죽어야 공공입찰 1년6개월 제한…‘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출처: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1211511001>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규범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가목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과 달리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음.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근거 조항에는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등의 규정도 포함될 수 있어 보임³⁾.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 규정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00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유사입법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4)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취지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산업재해 문제 개선의 상징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거나, 입찰 참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76)이 가결되어 해당 법령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안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기업 존속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가목을 통해 추가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경우가 있음.

현행법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치 및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⁵⁾.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비교해 보면, 두 법률은 산업재해⁶⁾를 규율 대상에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인 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치는 재해예방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조치 등을 포함하여 범위가 넓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조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상 (공통점)	산업재해를 규율 대상에 포함	
내용 (차이점)	산업재해 예방	재해 예방 + 재해 발생 시 대책

개정안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⁷⁾.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은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로 사업주 외에도 경영책임자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의무 위반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위주의 법률로서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충실성 확보 취지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동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안 제31조제1항제9호나목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76)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 법률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등의 위반으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76)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받은 벌점의 기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u>입찰참가자격 제한</u>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u>요청할 수 있다</u> .

- 9)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등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된 벌점이 일정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등을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76)이 가결되어 해당 법령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회피하기 어려운 부딪힘, 넘어짐 등 경미한 재해까지도 모두 누산하여, 공공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원천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38